

## 『품질경영 100선』 제도의 의의와 운영방향

### 1. 『품질경영 100선』이란

『품질경영 100선』은 국내기업중 품질경영활동이 가장 우수한 100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이 제도는 제조업, 건설, 유통, 서비스등 전 산업을 대상으로 1년간의 품질경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100개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품질경영 100선』 집으로 발간하여 이들 우수기업들의 주요혁신 사례를 보급함으로써 품질경영을 보다 빠르게 전산업에 확산 정착시키는 동시에 우수기업간에도 자율적으로 경쟁촉진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품질선진국 실현을 앞당기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매년 선정하게 된다.

### 2. 추진배경

UR협상 타결을 계기로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경제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점차 경제전쟁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이제 품질혁신이 없이는 그 어떤 기업이나 국가도 생존을 보장받

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일류기업, 1등상품이 아니고서는 살아 남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대량생산 체제하에서 제품을 정해진 규격에 맞도록 생산하는 일이 품질향상의 주된 내용이었으므로 불량율감소 중심의 품질관리만으로도 품질경쟁력 확보가 가능했으나, 최근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고 개성화 됨에 따라 소량 다품종 생산에 필요한 『질』 경영체제로의 전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품질의 개념 또한 기능적 품질외에 편리성, 서비스와 소비자의 만족도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공해등 사회적 품질까지를 요구하고 있는게 일반적인 추세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의 경영활동도 기획·설계로부터 제조·마케팅,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상품의 질은 물론 가격, 납기까지를 포함하는 총합적 품질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품질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품질경영 100선』제도는 바로 이러한 시대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

품질혁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생을 보게 되었다.

### 3. 운영방향

'94년도 『품질경영 100선』은 오는 5월말까지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품질경영 추진사례 및 성과를 중심으로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선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한 후 서류 및 현지심사결과를 종합, 소비자단체대표, 경제단체대표, 품질경영학회, 산업별, 그룹별 품질경영 추진본부등 각계 대표 15명으로 구성되는 『품질경영 100선』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하게 된다.

『품질경영 100선』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5월 31일까지 공진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산업별 조합이나 관련 단체등의 추천만으로도 가능하다. 추천기관은 국립공업기술원 및 각 지방공업기술원, 15개·시도, 한국표준협회 본부 및 각 지부, 그룹별, 산업별, 중소기업 조합별, 모기업별 품질경영 추진본부, 5개 공업단지관리공단, 대한품질경영학회, 한국품질관리기사회,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지역상공회의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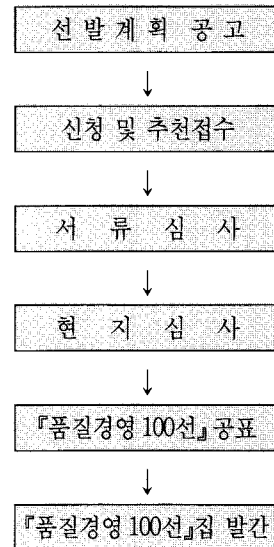
『품질경영 100선』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등 종합적인 성과와 교육훈련, 기술개발, 구매자재관리, 분임조 및 체안활동, 공정관리등에서 우수해야 하며 품질방침, 조직, 표준화, 품질보증체제, 고객관리등 전반적인 품질경영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서류 및 현지심사 결과 종합점수가 대기업은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중소기업은 7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품질경영 100선으로 선정된 업체는 그 명단을 소비자들에게 공표하고 회사현황 및 주요혁신사

례를 「품질경영 100선」 집으로 발간하여 보급하는 동시에 공업진흥청에서 발간하는 『품질소식』과 한국표준협회등 관련 단체의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적극 홍보되며 앞으로 『품질경영 100선』에 선발되지 않고서는 그해의 한국품질대상과 품질경영상을 신청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상할 수도 없게 된다.

### 4. 세부운영요령(공진청 공고 94-422호: '94.3.14)

#### 가. 선정절차



#### 나. 신청(추천)요령

- (1) 신청(추천)대상: 전산업체(별첨 1, 업종별 구분참조)
- (2) 신청(추천)기한: 5월말
- (3) 신청(추천)단위
  - 대기업: 사업부 단위
  - 중소기업: 회사단위
- (4) 신청방법
  - 신청희망업체가 직접 신청

- 각 추진본부 및 유관기관에서 소속업체중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추천
  - 추천기관
    - 국립공업기술원 및 각 지방공업기술원
    - 15개 시·도
    - 한국표준협회 본부 및 각 지부
    - 그룹별, 산업별, 중소기업 조합별, 모기업별 품질경영 추진본부
    - 5개 공업단지 관리공단
    - 대한품질경영학회
    - 한국품질관리기사회
    - 전기용품 안전관리협회
    - 지역상공회의소
    - 기타 유관단체
  - 기관별 추천업체수 : 제한없음

(5) 신청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
- 품질경영혁신 사례개요 : 5부
  - 회사개요(A4 1~2매)
  - 혁신활동 추진사례(서술식으로 작성하되 A4 10매 이내로 작성)
  - 추진성과(선발기준의 평가항목별로 작성하되 원칙적으로 계량화)

(6) 접수처 : 공업진흥청 품질관리과

**다. 심사요령**

(1) 심사위원단 구성

- 업종별로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3명씩 총 66명으로 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 심사위원은 품질경영학회, 한국표준협회, 산업별·중소기업별 추진본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함

(2) 심사방법 :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함

○ 서류심사

- 심사위원 : 업종별 심사실무위원회 위원 (업종별 3인)이 담당함
- 심사기간 및 일정 : 6. 1부터 6. 30까지 1개월간 실시함
- 심사방법
  - 품질경영 혁신사례, 주요추진성과를 중심으로 『품질경영 100선』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함
  - 평점은 심사항목별로 심사실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A, B, C, D, E 5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A:100%, B:80%, C:60%, D:40%, E:20%로 환산하여 산정함
  -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설명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심사실무위원회의 명의로 요청함.

○ 현지심사

- 심사대상 : 서류심사결과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본사, 사업부, 공장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서를 심사대상으로 함
- 심사위원 : 업종별 심사실무위원회 위원 (업종별 3인)이 담당함
- 심사기간 및 일정 : 업체당 심사기간은 1일 기준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일정은 심사 1주일전까지 개별 통보함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품질경영체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품질경영 성과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함
  - 평점은 서류심사와 동일하게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하여 환산함

(3) 심사결과 보고

심사실무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결과

를 종합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품질경영 100선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표
- 한국노동자총연합회 대표
- 그룹추진본부 대표
- 산업별 추진본부 대표
- 중소기업 추진본부 대표
- 심사실무위원회 대표
- 한국표준협회 부회장
- 대한품질경영학회장
- 품질관리국장

**라. 최종선정**

- (1) 선정업체수 : 100개기업
- (2) 선정방법
  - 전년도 한국품질대상, 품질경영상, 부문상 (IE, VE, PM)등 수상업체는 신청 또는 심사절차 없이 우선 선정함
  - 『품질경영 100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실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결과 보고내용을 종합검토후 선정함
    - 품질경영 100선 선정위원회
      - 위원장 : 공업진흥청 차장
      - 위 원 : 소비자연맹 대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  
무역협회 대표  
상공회의소 대표

• 간 사 : 품질관리과장

- 22개 업종별(별첨 1 산업분류 참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각 1개 업체씩 선정하며, 나머지는 업종구분없이 우수기업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수준일 경우는 중소기업을 우대함. 단, 서류 및 현지심사 결과 종합점수가 대기업은 800점미만, 중소기업은 700점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별첨 1)

**산 업 분 류 표**

업 종	산 업 명
1. 음식료품	A. 음 료 품 - 증류주 및 합성주, 발효주, 맥주 비알콜성 음료제조업 B. 식 료 품 - 육지 동물고기 가공저장, 낙농품, 과일 및 채소가공, 수산물 처리가공, 동식물유지, 곡물가공, 빵·과자 및 국수, 설탕, 식료품가공 조미료 및 식료첨가물, 배합사료, 기타식료품 제조업
2. 섬유·의복	A. 섬 유 - 제사 및 방적, 직조,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직물제품, 편조, 용단 및 자리, 끈 및 끈가공품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B. 의 복 - 맞춤복, 기성복 제조업

업 종	산 업 명
2. 섬유·의복	A. 섬 유 - 제사 및 방적, 직조,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직물제품, 편조, 용단 및 자리, 끈 및 끈가공품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B. 의 복 - 맞춤복, 기성복 제조업
3. 가죽·모피·신발	A. 가 족 - 원피가공, 재생 및 인조가죽, 산업용 가죽제품, 가방, 핸드백, 가죽케이스,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B. 모 피 - 원모피 처리, 인조모피, 모피제품 제조업 C. 신 발 - 가죽신, 특수용 신발, 가정용 슬리퍼 및 유사신발, 신발재단물 및 부속품, 기타 신발(고무신 제외) 제조업
4. 목재 및 나무	- 제재업 및 목재가공,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 및 코르크 제품, 가구 및 장치물(금속제외) 제조업
5. 펄프·종이제품	- 펄프, 종이 및 판지, 종이 및 판지용기,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6. 석유정제,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 석유정제, 연탄, 그라스 및 윤활유, 아스팔트 및 기타 포장재료,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7. 화학제품	- 유기화학제품, 무기화학제품, 연료·안료 및 유연제 화학비료, 농약, 도료, 의약품, 비누·세정제·계면활성제 및 화장품, 플라스틱제품,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업
8. 고무제품	- 타이어 및 튜브, 타이어 재생, 고무신, 산업용 고무제품, 위생용 고무용품, 경화고무 및 경화고무제품,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9. 비금속광물 제품	- 도기·자기 및 토기, 유리 및 유리제품, 구조점토제품, 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틱, 콘크리트제품, 내화물,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업종	산업명
10. 비철금속제품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 비철금속 주조 및 단조, 기타 비철금속 산업
11. 철강제품	- 제철 및 제강, 철강 압연·연신 및 강관, 주조, 기타 철강업
12. 조립금속제품	- 날붙이·수공구 및 철물, 금속제 가구 및 장치물, 구조금속, 금속압 단품, 열처리 및 표면처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금속 제조업
13. 기계제품	- 기관 및 터빈, 농업용 기계 및 장비, 금속공작가공 및 목공기계, 특수산업용 기계 및 장비,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서비스산업용 기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가정용 전기기구	- 가정용 전기기구
15. 전자 및 전자기기(가정용 전기기구 제외)	- 전기산업용 기계 및 장치, 음향·영상 및 통신장비, 전자관 및 기타 전자제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 및 전자기계 기구 제조업
16. 자동차	-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17. 운수장비(자동차 제외)	- 선박건조 및 수선, 철도장비, 모터사이클 및 자전거항공기 제조 및 수선
18. 의료, 광학,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 의료용 기구 및 용품, 사진 및 광학용품, 시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19. 기타 제조업	-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모조장식 및 장식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20. 건설업	- 건설
21. 유통업	- 유통
22. 서비스업(유통업 제외)	- 금융, 보험, 운수, 통신, 숙박, 요식, 용역등

(별첨 2)

## 『품질경영 100선』 선발 심사기준

### 1. 품질경영 성과(600점)

구 분	심사항목	배 점	심 사 내 용	평 가 지 표 계 산 식
1. 종합성과 (80)	성 장 성	20	○ 매출액 증가율	$(\text{당기매출액} - \text{전기매출액}) / \text{전기매출액} \times 100$
	수 익 성	30	○ 매출액 경상이익률 ○ 매출액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매출액 $\times 100$ 영업이익/매출액 $\times 100$
	생 산 성	30	○ 인당부가가치증가율 ○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액/종업원수 $\times 100$ 부가가치액/(유형고정자산 건설 가계정) $\times 100$
2. 인재육성 (50)	교육훈련	50	○ 인당교육시간 ○ 인당교육비 ○ 교육비비율	총교육시간/종업원수 총교육비/종업원수 총교육비/매출액 $\times 100$
3. 기술개발 (80)	기술개발	40	○ 기술투자비율 ○ 기술인력비율	기술투자비/매출액 $\times 100$ 생산 및 개발기술인력/종업원수 $\times 100$
	기술성과	40	○ 신제품 매출비율 ○ 신제품 출하율	신제품매출액/매출액 출하제품수/총제품수
4. 구매자재 (60)	재고관리	30	○ 재고자산 회전을	매출액/재고자산 총금액
	자재관리	30	○ 자재불량을	불량금액/(원자재+부품)의 구 매금액 $\times 100$

구 분	심사항목	배 점	심 사 내 용	평 가지표계산식
5. 개선 활동 (60)	제안 활동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당 제안건수</li> <li>○ 제안채택율</li> <li>○ 표준화연계율</li> </ul>	총제안건수/종업원수 총채택건수/총제안건수×100 표준화연계건수/총채택건수×100
	분임조활동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임조 조직율</li> <li>○ 현장분임조활동건수</li> <li>○ 사무, 관리자 개선 활동건수</li> <li>○ 표준화연계비율</li> </ul>	분임조편성인원수/종업원수×100 생산직개선활동건수/편성수 사무직, 관리자, 임원 개선활동건수/편성수 표준화연계건수/총완료건수×100
6. 공정 관리 (100)	공정 품질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불량율</li> <li>○ 공정불량 감소율</li> <li>○ Line 직진율 증가율</li> </ul>	(원부자재+부품+재고품)의 불량금액)/(완제품대수×생산원가)×100 최근 3년간 불량율 추이비교 전년도직진율/당해년도직진율×100-최근 3년간 직진율 추이비교
	제품 품질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제품불량 감소율</li> <li>○ CLAIM 감소율</li> </ul>	최근 3년간 불량율 추이비교
	설비 보전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종합효율</li> <li>○ 설비고장강도율</li> <li>○ 설비고장도수율</li> <li>○ 예방보전을</li> </ul>	양품을×시간가동율×성능가동율 고정정지시간/부하시간×100 설비고장회수/부하시간×100 총예방보전시간/총보전작업시간×100
7. 경쟁력평가 (90)	시장점유율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점유 확대율</li> </ul>	(당기 시장점유율/전기시장 점유율)-1
	1인당 생산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생산성</li> </ul>	년간총생산량/총종업원수
	1인당 부가가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부가가치액</li> </ul>	부가가치액/종업원수
8. 우대 사항 (80)	○ 품질경영상 및 부문상수상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5년간 수상실적</li> </ul>	최근 5년내 총 수상실적
	○ 국제품질보증체계(ISO9000)인증획득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획득 여부</li> </ul>	
	○ 분임조경진대회 수상업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5년간 수상실적</li> </ul>	최근 5년내 총수상실적
	○ 노사관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5년간 쟁의 및 파업건수</li> </ul>	최근 3년간 쟁의 및 파업 기간이 없는 기간



2. 품질경영체계(400점)

심 사 항 목	배 점 기 준	심 사 내 용
1) 품질방침 및 전략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경영방침, 목표 및 전략</li> <li>○ 품질경영방침의 계층별 전개</li> <li>○ 방침관리체계</li> <li>○ 방침실시 및 관리</li> </ul>
2) 품질경영 조직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M 추진조직 및 업무분담</li> <li>○ QM 추진조직 운영체계</li> <li>○ 품질감사체계 및 운영</li> </ul>
3) 사내표준화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화 추진조직</li> <li>○ 표준의 분류체계</li> <li>○ 표준의 관리체계 및 운영</li> </ul>
4) 교육훈련체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조직</li> <li>○ 교육훈련체계</li> <li>○ 교육훈련평가 및 관리</li> </ul>
5) 연구개발 및 체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방침</li> <li>○ 연구개발체계</li> <li>○ 소비자요구 파악 및 품질설계</li> </ul>
6) 제조공정관리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공정 관리체계</li> <li>○ 공정관리 능력</li> <li>○ 공정능력파악</li> <li>○ 이상공정대책</li> <li>○ 작업표준화</li> </ul>
7) 구매·외주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 재고관리</li> <li>○ 수입검사</li> <li>○ 구매 및 외주관리체계</li> </ul>
8) 검사관리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관리체계</li> <li>○ 검사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li> </ul>
9) 설비관리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관리조직</li> <li>○ 설비보전활동</li> <li>○ 계측기관리</li> <li>○ 청정운동</li> </ul>
10) 고객관리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관리체계</li> <li>○ 고객불만의 파악과 해결</li> <li>○ 고객만족도 관리</li> </ul>

※ 품질경영체계에 대한 심사는 품질경영 성과(600)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우수업체에 한해서 현지심사시 실시